상주시 공고 제2026-1648호

2027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 공고

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4일

상 주 시 장 

1. 지원목적

○ 유기농업자재,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, 농약·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

2. 지원자격 및 내용

○ **신청자격**

- 녹비작물 종자
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**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**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 및 농업법인
 - 2026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**토양검정 결과**를 본 사업 신청 기한 내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(없는 경우 2025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)
-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
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**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**로서, 「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**유기·무농약 농산물 인증**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

※ 2026년도 **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**을 성실 납부한 유기·무농약 농산물 인증 농업경영체에 한해 지원

- 2026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**토양검정 결과**를 본 사업 신청 기한 내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(없는 경우 2025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)

○ **지원품목**

- 녹 비 종 자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라스, 연맥, 트리티케일, 네마장황
- 천적(25종): 갈색반날개, 굴파리좀벌, 담배가루이좀벌, 쌀좀알벌 등
- 유기농업자재
 - 「친환경농어업법」 제37조에 따른 공시 자재
 -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'유기질비료지원사업', '토양개량제지원사업' 등 신청농지는 중복품목 지원 불가

○ **지원비율**: 보조 50%, 자부담 50%

○ **지원한도**

- 녹비작물 종자: 헤어리베치 60kg, 녹비(청)보리 140kg, 호밀 160kg, 자운영 50kg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 50kg 연맥 160kg, 트리티케일 160kg, 네마장황 60kg
-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(ha당, 총 구입비 기준): 유기인증 200만원, 무농약인증 150만원, 일반농지 100만원

3. 신청 및 접수

○ 신청기한: 2026. 12. 31.(목)까지

○ 신청접수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4. 심사 및 결과통보

○ 심의결정: 상주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

○ 심사기준: 사업의 적합성 및 실현성,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,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, 파급효과 등

○ 결과통보: 보조금 심의의결 후 해당 읍면동 확정 시달

5. 보조금 지급, 사업평가, 정산

❍ 지원 결정된 금액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

❍ 사업완료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및 정산 보고

6. 기 타

❍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

❍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및 자금회수 등 적법조치

❍ **사업기간 중에 친환경 인증이 유효한 건에 한해 보조금 지원**

❍ 문의처

- 농업정책과 담당자(☎ 054-537-7448)
-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친환경농업 담당자